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82
----------	------

제출년월일 : 2024년 4월 3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상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소액체납액 가산세 면제기준 상향에 맞추어 일반우편 송달금액기준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고액체납액 범위를 기존 '가산금' 제외에서 '가산세' 제외로 변경(안 제3조제2항제4호)
- 나. 일반우편으로 송달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안 제7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합 의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2. 8. ~ 2024. 2. 28.) 결과: 의견 없음
- (2) 신·구 조문대비표: 별도 붙임

※ 작성자: 재무국 세제과 박상웅 (☎2133-3355)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항제24호”를 “법 제2조제1항제23호”로, “가산금은”을 “가산세는”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하며, 이하”를 “이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한다.

제4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0조”를 “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로, “대리인의 선정”을 “대리인 지정”으로, “규칙”을 “시장에게 규칙”으로, “선정 신청서”를 “지정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청구인등”을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를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액채납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가산금이 포함된 부과 분의 경우 가산금을 가산세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한다.</p> <p>1. ~ 3. (생략)</p> <p>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건당 1천만원 이상 체납액(<u>법 제2조제1항제24호에 따른 가산금은 제외한다</u>)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시세 체납액 전부(<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액"이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단서 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가. ~ 다.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4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0조</p>	<p>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 ---<u>법 제2조제1항제23호</u>--- -- <u>가산세는</u> ----- -----<u>이하</u> ----- ----- ----- -----.</p> <p><u>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가. ~ 다.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4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 --- <u>법 제10조</u>-----</p>

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여 교부한다.

제7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대리인이 없는 과세전적 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제7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 45만원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 과세전적 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 (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 등"이라 한다) -----
----- 대리인 지정----- 시장에게 규칙-----
----- 지정 신청서-----
-----.

②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지방세기본법 상 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금 관련 조문을 통합하는 개정 규정의 시행시기 도래에 따른 개정이므로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음

4. 작성자 : 재무국 세제과 박상웅(2133-3355)